입법회의와 조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영국 직할 식민지의 헌정 구조

영국 직할 식민지는 왕실이 임명한 총독이 통치했으며, 전원 관리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회의(Executive Council)가 총독을 보좌했습니다. 입법은 관리 위원과 총독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입법회의(Legislative Council)가 맡았고, 이 회의에서는 관리 위원들이 근소하지만 항구적인 과반을 차지했습니다.[1] 입법회의는 1867년 4월 1일 구성되었는데, 처음에는 위원이 4명뿐이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규모가 커졌습니다.[2]

이 헌정 구조는 행정적 통제와 협의를 결합했습니다. 관리 과반이 비관리 위원들을 표결로 누를 수 있었기 때문에, 총독과 관리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조치든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비관리 위원들의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식민지의 번영과 세수를 좌우하는 상업 공동체를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입법회의는 상인들이 제안된 조치를 비판하고, 수정안을 내며, 개혁을 촉구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비관리 위원과 상업계의 목소리

비관리 위원은 주로 유럽인 상업 공동체에서 선출되었지만, 아시아인 위원도 일찍부터 임명되었습니다. 1869년 총독은 황포(Whampoa)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광둥인 상인 호아케이(Hoo Ah Kay)를 입법회의 최초의 화교 위원이자 최초의 아시아인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3] 호아케이는 1830년 싱가포르에 도착해 아버지에게서 선박 보급 회사인 황포 앤드 컴퍼니(Whampoa and Co.)를 물려받았고, 영국 해군 함정에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1856년부터 미국에서 얼음을 수입했고, 러시아, 일본, 중국의 영사를 지냈으며, 싱가포르 식물원(Singapore Botanic Gardens) 설립에도 힘을 보탰습니다.[4]

아시아인 비관리 위원의 임명은 공동체 지도자를 통해 통치하는 식민지 관행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제A편에서는 이 관행의 기원을 초기 정착지의 두령(headman)에서 찾았습니다. 이 임명은 또한 식민지 교역에서 점점 더 큰 몫을 장악한 화교 상인들의 경제적 비중을 인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입법회의는 현대적 의미의 대의 기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20세기에 해협 화인 지도자 탄쳉록(Tan Cheng Lock)은 직접선거와 비관리 위원 과반을 요구했지만, 지역 정치에 대체로 무관심한 사회에서 이러한 요구는 거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5]

입법회의에는 식민지 내부의 긴장도 드러났습니다. 싱가포르가 성장하면서 싱가포르 출신 위원들이 회의를 주도하게 되었고, 입법부가 싱가포르 문제에만 집중한다고 느낀 페낭과 믈라카 대표들은 이를 못마땅해했습니다.[6] 이러한 경쟁은 제C편에서 살펴보는 싱가포르와 말라야 지역의 이후 분기를 예고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입법 계획

입법회의는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방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들은 공공 행정, 세입, 보건, 치안, 이민, 토지, 해운, 상업을 아울렀습니다. 다수는 영국이나 인도의 모델을 차용한 것이었고, 일부는 식민지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조례들은 동인도회사 시절 해협식민지를 규율하던 영국법, 인도 법률, 현지 규정의 불확실한 혼합을 함께 대체했습니다.

형법 분야의 가장 중요한 법령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1871년 조례 제4호로 제정된 해협식민지 형법전(Penal Code)은 1860년 인도 형법전을 다시 제정한 것으로, 1872년 9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7] 1870년 형사소송조례(Criminal Procedure Ordinance)에 이어 1900년에는 포괄적인 형사소송법전(Criminal Procedure Code)이 제정되었습니다. 1893년 증거조례(Evidence Ordinance)는 1872년 인도 증거법(Indian Evidence Act)을 받아들였습니다.[8]

상사 입법도 발전했습니다. 1880년대 후반에는 여러 조례가 부동산 양도, 동산 매도증서(bills of sale), 파산에 관한 법을 개정했습니다.[9] 영국 법률을 본뜬 회사법령(Companies Ordinance)은 유한회사의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제A편 제III장에서 다룬 1878년 민사법령(Civil Law Ordinance)은 현지 법령이 규정하지 않는 모든 사안에 영국 상사법이 식민지에서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인도에서 온 법전화, 영국에서 온 보통법

그 결과 형성된 법체계는 두 가지 연원을 결합했습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증거법은 영국 법률가들이 식민지 환경을 위해 기초한 인도 모델에 따라 법전화되었습니다. 인도 형법전의 주된 기초자였던 매콜리 경(Lord Macaulay)은 자신이 제안한 체계가 기존 어떤 체계의 요약도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영국법을 단순화된 형태로 활용했습니다.[10] 제임스 피츠제임스 스티븐(James Fitzjames Stephen)은 자신의 인도 증거법에 대해 "영국과 인도의 증거법 전체를 매우 짧은 분량으로(into very short compass the whole of the English and Indian law of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evidence)" 압축했다고 말했습니다.[11] 싱가포르 변호사회는 영국법을 선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도 형법전의 도입에 반대했지만, 여론은 이 법전을 지지했습니다.[12]

반면 민사법과 상사법은 대체로 법전화되지 않은 채 영국 보통법과 영국 상사 법률을 계속 따랐습니다. 계약, 신탁, 재산, 불법행위는 1826년 칙허장과 1878년 민법조례를 통해 계수된 영국법 원칙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이 구분은 오늘날까지 싱가포르 법을 형성해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형법은 법전화되어 있으며 인도에서 물려받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법, 신탁법, 상사법은 보통법 계열에 속하며 영국 및 영연방 판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구분은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상인과 은행은 런던의 거래 상대방이 이해하는 상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었고, 법전화된 형법은 식민 정부에 크고 다양한 인구를 치안 관리할 명확한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법전화는 매콜리와 스티븐이 중시한 확실성을 가져다주었고, 보통법은 상인들이 중시한 유연성과 국제적 친숙성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주

1. Wikipedia, "Straits Settlements"(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an Executive Council, composed wholly of official (i.e., ex-officio) members, and a legislative council, composed partly of official and partly of nominated members, of which the former had a narrow permanent majority". ↩
2. Wikipedia, "Legislative Council of the Straits Settlements"(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67년 4월 1일 구성되었으며, "with just four members"로 시작해 해를 거듭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
3. Wikipedia, "Hoo Ah Kay"(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69년 "the first Legislative Council member of Chinese ethnicity"로 임명되었으며, 최초의 아시아인 위원으로도 기록됩니다.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4. Wikipedia, “Hoo Ah Kay”(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30년 싱가포르 도착, 황포 앤드 컴퍼니(Whampoa and Co.) 승계, 영국 해군 공급업자, 1856년부터 미국산 얼음 수입, 일본(1877년), 중국(1879년), 러시아 영사, 싱가포르 식물원 설립에서 핵심적 역할, 1880년 3월 27일 사망. ↩

5. Wikipedia, “Legislative Council of the Straits Settlements”(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탄첸록은 “called for popular representation through direct election, and for the number of non-official members to be increased to a majority”했으나, “as there was little support from a society widely apathetic to local politics”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

6. Wikipedia, “Legislative Council of the Straits Settlements”(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Singaporean members increasingly dominating the council”은 믈라카와 페낭의 정치인들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

7. Wikipedia, “Penal Code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0월): 1860년 인도 형법전을 다시 제정한 1871년 조례 제4호(해협식민지)는 1872년 9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

8. “Some Notes on the Origins of the Major Criminal Enactments of Singapore”, *Malaya Law Review*, vol. 31, 1989년 7월: 1870년 형사소송조례, 1900년 형사소송법전(조례 제21호), 1872년 인도 증거법에 기초한 1893년 증거조례 제3호. ↩

9. “Chapter VIII: 1885–1890”, *Malaya Law Review*, vol. 11, no. 1, 1969년 7월: 1886년 조례 제6호와 1888년 조례 제2호에 의한 부동산 양도, 동산 매도증서, 파산법의 개정. ↩

10. “Some Notes on the Origins of the Major Criminal Enactments of Singapore”, *Malaya Law Review*, vol. 31, 1989년 7월, 매콜리 인용: “the system of penal law which we propose is not a digest of any existing system”. ↩

11. “Some Notes on the Origins of the Major Criminal Enactments of Singapore”, *Malaya Law Review*, vol. 31, 1989년 7월, 스티븐 인용.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12. “Some Notes on the Origins of the Major Criminal Enactments of Singapore”, *Malaya Law Review*, vol. 31, 1989년 7월: 형법전은 영국법을 선호한 싱가포르 변호사회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여론은 그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